

비전임교원인사규정

제정 2022.11.01.
개정 2023.09.18.
개정 2024.08.05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.)에서 임용하는 비전임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비전임교원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초빙교수: 교육 및 예술분야, 연구기관, 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근무경력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그 전공 또는 경력 등과 관련하여 연구, 교육활동을 하도록 초빙된 교원을 말한다.
- 겸임교수: 산학연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기관·연구기관·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인사로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본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할 목적으로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.
- 특임교수: 국가·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능력이 뛰어난 자로서 본교의 교육목적상 임용된 자를 말한다.
- 석좌교수: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적으로 공적이 인정되는 인사 중 본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본교의 교육목적상 임용된 자를 말한다.

제3조(개별계약의 원칙) 비전임교원의 임용(위촉)계약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계약 대상자별로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4조(적용범위) 비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5조(임무) 비전임교원은 법인 정관 및 우리 대학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.

제6조(면직) ① 비전임교원이 임용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 할 수 있다.

- 정관,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
-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비전임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- 소속 스쿨(전공)이 폐과 되었을 경우
- 담당교과목이 모두 폐강된 경우
-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 - 제5조의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
 - 수업 및 휴·보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 - 성적처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

라. 수업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7.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
 8.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·선도한 때
 9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
 10.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-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학부(과)장은 총장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.

제7조(휴직) 비전임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.

제8조(징계) 비전임교원은 본교 교원징계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장 초빙교수

제10조(자격)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교과를 교육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- ①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 할 것
- ②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 받을 것
- ③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대학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자가 될 것(단, 국외거주 외국인 교원은 예외로 한다.)
- ④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의 지급이 명시될 것
- ⑤ 각 모집분야별 세부지원 자격에 해당 될 것

제11조(임용) ① 신규채용은 공개 혹은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한다. 다만, 본교를 정년퇴직한 교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 전임교원 전체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
-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- ③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각호, 제1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.
- ④ 신규임용 절차는 교원신규임용공개채용심사지침에 따라 실시한다.
- ⑤ 초빙교수는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용한다.

제12조(재임용) ① 초빙교수의 임용권자는 당해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초빙교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초빙교수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- ③ 초빙교수를 재임용 할 때는 직전 2개학기 강의평가 평균 4.0 이상인자로 해당스쿨의 전임교원의 전체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- ④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 거부, 탈락 초빙교수에게 지정된 기일에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⑤ 초빙교수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임용시기 및 임용기간) ① 교원의 임용 시기는 매년 학기 초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제39조의5 에 의한 특별채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3년 범위 내에서 재임용할 수 있다. 다만 3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당연퇴직자의 경우에는 신규임용 절차를 따른다.

③ 초빙교수는 만 65세까지 임용할 수 있으며, 만 65세가 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4조(복무 및 처우) ① 초빙교수의 책임시수는 “수업운영규정”에 따른다.

② 초빙교수는 사전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동안 타기관 출강 또는 겸직 할 수 있다.

③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은 겸직할 수 없다.

제15조(임금) ① 초빙교수의 강의료는 교직원보수규정의 강의료 기준에 의하며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<삭제 2024.8.5.>

제3장 겸임교수

제16조(자격)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 . 실험 . 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.

- ①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- ②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
- ③ 원 소속기관에서 상시(유사경력이 3년 이상)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근로자 단, (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)
- ④ 타대학 겸임교수 또는 초빙교수로 임용되지 않은 자
- ⑤ 각 모집분야별 세부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
- ⑥ 소속 기관장의 출강 동의를 받은 자

제17조(임용) ① 신규임용은 공개 혹은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한다. 다만, 본교를 정년 퇴직한 교수의 경우에는 해당학과 전임교수 전체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
-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- ③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항 각호, 제1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 할 수 있다.
- ④ 신규임용 절차는 교원신규임용공개채용심사지침에 따라 실시한다.
- ⑤ 겸임교수는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총장이 임용한다.

제18조(재임용) ① 겸임교수의 임용권자는 당해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겸임교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 받은 겸임교수는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겸임교수를 재임용 할 때는 직전 2개 학기 강의평가 평균 4.0 이상인자로 해당스쿨의 전임교원의 전체 추천을 받아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.
- ④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임용 거부, 탈락 겸임교수에게 지정된 기일에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⑤ 겸임교수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9조(임용시기 및 임용기간) ① 교원의 임용 시기는 매년 학기 초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 제39조의 5 에 의한 특별채용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- ②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그 이후는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 등의 절차를 따른다.
- ③ 겸임교수는 만 65세까지 임용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0조(복무 및 처우) ① 겸임교수의 책임시수는 “수업운영규정”에 따른다.

- ② 겸임교수가 타 대학에 출강 할 경우 타대학 출강 정보를 신고하여야 한다.

제21조(임금) ① 겸임교수의 강의료는 교직원보수규정의 강의료 기준에 의하며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- ② <삭제 2024.8.5.>

제4장 특임교수

제22조(자격) 특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국내·외에서 연구실적과 산업체 현장 실무능력이 뛰어난 자
- ② 특정분야의 권위자로서 업적이 탁월하며, 본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다

고 판단되는 자

- ③ 대학의 홍보, 프로젝트 등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
- ④ 기타 본 교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

제23조(임용) 특임교수는 해당 스쿨 및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쿨 원장 및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.

제24조(임기) ① 특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.

②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한다.

- 1.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
- 2.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

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제25조(구비서류) 특임교수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
- ① 특임교원 추천서(서식 제1호)
- ② 이력서(서식 제2호)
- ③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
- ④ 연구실적서(필요시)
- ⑤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

제26조(처우) 특임교수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다

- ① 총장은 필요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하여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하거나 강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의료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특임교수에 대한 강의료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7조(임무) 특임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강의 또는 연구
- ② 특별강연, 세미나
- ③ 기타 본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

제5장 석좌교수

제28조(자격) 석좌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① 국내·외에서 연구실적이 현저하고, 교육경험이 풍부한 자
- ② 특정분야의 권위자로서 업적이 탁월하며, 본교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 또는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
- ③ 기타 본 교 발전에 기여하고 교육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

제29조(임용) 석좌교수는 해당 스쿨의 의견을 수렴하여 스쿨 원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, 이사회에 보고 한다.

제30조(임기) ① 석좌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.

②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한다.

1.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
2.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
3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제31조(구비서류) 석좌교수를 임용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
- ① 석좌교원 추천서(서식 제1호)
- ② 이력서(서식 제2호)
- ③ 최종 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
- ④ 연구실적서(필요시)
- ⑤ 기타 추대에 필요한 서류

제32조(처우) 석좌교수에 대한 처우는 다음과 같다

- ① 총장은 필요에 따라 전공분야에 관하여 연구 활동에 참여하게 하거나 강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의료 또는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석좌교수에 대한 강의료 또는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3조 (임무) 석좌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강의 또는 연구
- ② 특별강연, 세미나
- ③ 기타 본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자문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08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(서식1호)

(특임 / 석좌)교수 추천서

성 명	(한글)	(한자)	(영문)				
국 적		생년월일	년	월	일	성 별	
현 소속		직 위		연락처	자택:	회사:	H P:
현 주소							
전공분야							
희망임용기간	년	월	일	~	년	월	일
희망 강의교과목 또는 특강							

위와 같이 (특임/석좌)교수를 추천합니다.

년 월 일

스쿨 원장: _____(인)

청강문화산업대학교총장 귀하

(서식2호)

이 력 서(특임 / 석좌)

1. 인적사항

사진첨부	성명(한글)		영문		한자				
	생년월일		나이		국적				
	등록기준지 (본적)				주민등록번호				
현주소	(우편번호: -)				연 락 처	주택(국내)			
현근무지						핸드폰			
						직 장			
								E-mail	

2. 학력사항

학위	졸업구분	학 교 명	학과(세부전공)	학위명	학위취득기간	학위논문명

3. 연구실적

발표구분	저자명(전원)	제 목	게재지명	발행기관	발 표 년월일

